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43

발의연월일: 2024. 11. 25.

발 의 자 : 김정재 · 김소희 · 박충권

박정훈 · 김기현 · 권영진

윤영석 • 유영하 • 박덕흠

김승수 · 고동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되어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여 점자·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편의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3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포함한다)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세대단말기(홈네트워크의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점자·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할 것
- 2. 장애인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ㆍ높이를 고려할 것
- 3.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 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② (생략)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u>제2항</u>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여	필.	요한	단밀	장치를	를 밀	날힌
다)	에	설치	되는	응용	소프	ΣE
웨이	거를	통한	·세디	개단말	기 3	스직
등	접근	그성을	. 높¢	일 것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u>4</u>	 		
	 - <u>제2항 ·</u>	제3항	